

4. 第2種國民住宅債券買入畢證 徵求 및 管理指針

建設部 住企 30417-232 1992. 5. 15

1. 매입필증의 징구

○ 제출의무자

-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설되는 주택(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을 제외한다)을 공급받고자 제2종국민주택채권(이하 “채권”이라 한다)을 매입하기로 약정하여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후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(이하 “당첨자”라 한다)

○ 징구의무자

- 당첨자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주택건설사업주체(이하 “사업주체”라 한다).

○ 징구대상금액

- 주택공급신청시 매입하기로 약정한 채권금액(이하 “매입약정액”이라 한다).

○ 징구시기

- 당첨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시

○ 확인 및 매입필증징구대장 작성

-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 체결시 반드시 징구한 매입필증금액이 매입약정액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사업주체가 매입필증을 징구한 때에는 소인의 표시를 하고 별첨서식에 의한 제2종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징구대장(이하 “매입필증징구대장”이라 한다)을 작성하여야 한다.

2. 매입필증의 관리

○ 제 출

-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 체결기간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매입필증징구대장사본 및 매입필증을 한국주택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다만, '92. 1. 1-5. 17 기간중 징구한 매입필증에 대하여는 즉시 소인의 표시를 하고 매입필증징구대장을 작성한 후 동 사본 및 매입필증을 '92. 6. 15까지 한국주택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○ 확 인

- 한국주택은행장은 사업주체가 제출한 매입필증징구대장 사본에 기재된 금액과 매입필증금액이 매입약정액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
- 만약 매입필증금액이 매입약정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이를 즉시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 차액을 징구토록 하여야 한다.

○ 보 관

- 사업주체는 매입필증징구대장 원본을 주택공급계약 체결기간 종료일로부터 10년간 보관한 후 한국주택은행에 이관하여야 하고
- 한국주택은행장은 사업주체에게서 제출받은 매입필증징구대장 사본 및 매입필증은 제출받은 날로부터 20년간, 매입필증징구대장 원본은 이관받은 날로부터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
3. 기타사항

○ 이 규정은 사업주체가 '92. 1. 1이후 징구한 매입필증에 대하여 적용한다.

〈별첨서식〉 第2種國民住宅債券買入畢證 徵求臺帳 (단위 : 만원)

| 일련 번호 | 징구 일자 | 매 입 자 | | | 매 입 필 증 | | 매 입 약정액 | 비고 |
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|------------|----|
| | | 주소 | 성명 | 동호수 ¹⁾ | 기호 및 번호 | 금 액 | | |
| | | | | | | | | |

- 1) 동호수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된 동호수를 말함
- 2) 위 서식은 단지별로 작성함
- 3) 사업주체는 한국주택은행장이 매입필증금액과 매입약정액을 쉽게 대조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위 서식을 동호수순으로 작성하도록 함